

第4974號

1968年 6月 14日

公 告 文 件

電話 直通 72-1803  
交換 72-7946~50

## 官報

1953年 11月 3日  
第3種郵便物認可大韓公報社 인쇄·보급  
電話 23-2150~9  
一部 22원 32전

## 目次

## 大韓民國

- 大統령령제3,483호(교원교육원령)
- 大統령령제3,484호(도서벽지교육진흥법)
- 大統령령제3,485호(영화법시행령증개정의전)
- 大統령령제3,486호(풀풀세법시행령증개정의전)

## 憲令

- 國防부훈령제106호(군사보안법시행규칙증개정의전)

## 告示

- 농림부고시제1,816호(배합사료공장등록사항허소)
- 상공부고시제3,683호(외국환은행의장에대한권)
- 상공부고시제3,684호(상공부고시제2,817호개정)
- 건설부고시제368호(공유수면매립허가)
- 건설부고시제369호(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변경)
- 건설부고시제370호(도로구역결정에관한고시)
- 건설부고시제371호(공유수면매립면허)
- 영남국토건설국고시제11호(공유수면매립공)

## 公報

- 보건사회부공고제47호(서울대학교직원의)
- 보건사회부공고제48호(요양담당계약서기재사항변경)

## 지방행정

- 충청북도(조례)

## 事例

- 인사발령

## 광고

- 공시최고, 제권판결, 공고

## 大統령령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教員教育院令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朴正熙

1968年 6月 14日

國務總理 丁一權  
國務委員 權五柄  
文教部長官

## ◎大統領令第3,483號

## 教員教育院令

第1條 (目的) 이 습은 教育法 第1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大學課程·師範大學課程 및 教育大

學院課程을 研修하는 教員再教育機關으로서 教員教育院(이하 “教育院”이라 한다)을 設置·運營함을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設置)** ① 教育院은 教育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院에 附設한다. 다만, 教育大學·師範大學 및 教育大學院이외의 大學 또는 大學院으로서 文教部長官이 특히 인정하는 大學 또는 大學院에는 教育院을 附設할 수 있다.

② 教育大學에 附設하는 教育院은 教育大學課程, 師範大學에 附設하는 教育院은 師範大學課程, 教育大學院에 附設하는 教育院은 教育大學院課程으로 하고, 前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 附設하는 教育院은 그 附設하는 學校의 정도에 해당하는 課程으로 한다.

**第3條 (設置·認可)** ① 教育院의 附設은 國立學校에 있어서는 文教部長官이 행하고, 國立學校 이외의 學校에 있어서는 그 設立經營者가 文教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행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院의 附設과 認可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教部令으로 정한다.

**第4條 (教育院의 教育對象)** 教育大學課程의 教育院은 初級大學을 卒業하지 아니한 教員에게 教育大學의 課程을,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은 大學(4年制)을 卒業하지 아니한 教員에게 師範大學의 課程을 각각 履修하도록 하며, 教育大學院課程의 教育院은 大學(4年制)을 卒業한 教員에게 大學院의 課程을 履修하도록 한다.

**第5條 (入學資格)** ① 教育大學課程의 教育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國民學校敎員으로 하고,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中等學校敎員으로 한다.

② 教育大學院課程의 教育院에 入學할 수 있는 者는 國民學校敎員 또는 中等學校敎員으로서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大學(4年制)을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을 修了한 者.

③國民學校教員 및 中等學校教員으로서 教育大學·初級大學이나 實業高等專門學校를 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이상의 學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와 教育大學課程의 教育院을 修了한 養成する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에 編入學할 수 있다.

**第6條 (定員)** 教育院의 學生定員은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당해 教育院의 學則으로 정한다.

**第7條 (授業)** ①教育院의 授業은 季節制 또는 夜間制로 한다.

②教員의 修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과 함께 時間制·通信制 또는 委託制教育의 方法에 의하여 授業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前項의 規定에 의한 授業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文教部令으로 정한다.

**第8條 (履修學點)** ①教育院의 學科目 履修單位는 學點으로 하되, 16時間의 履修를 1學點으로 한다. 다만, 實驗·實習·實技와 體育은 32時間を 1學點으로 한다.

②教育大學課程과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에 있어서는 每學期 24學點을, 教育大學院課程에 있어서는 每學期 12學點을 超過하여 取得할 수 없다.

③前條第2項의 教育方法에 의한 學點은 總履修學點의 2分의 1을 超過하여 取得하지 못한다.

④教育院의 修了에 필요한 履修學點은 教育大學課程은 80學點이상, 師範大學課程은 160學點이상, 教育大學院課程은 32學點이상으로 한다.

**第9條 (教育課程의 內容)** 教育院의 教育課程의 內容은 文教部長官이 정한다.

**第10條 (教育實習의 免除)** ①教育院의 學生으로서 3年이상의 教育經歷을 가진 者는 文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教育實習을 免除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實習이 免除된 者에 대하여는 당해 教育實習에 관한 學點을 取得한 것으로 본다.

**第11條 (轉學)** 教育院의 在籍者로서 그勤務地가 變動된 때에는 다른 教育院에 轉學할 수 있다. 이 경우 轉學者는 당해 教育院이 學生定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12條 (編入學)** ①教育院을 修了한 者중 文教

部令으로 정하는 者는 그 教育院의 教育課程에 相應하는 教育大學·師範大學·大學 또는 大學院에 編入學할 수 있다.

②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編入學을 하는 者는 大學生定員令에 規定한 學生定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教育院을 修了한 者가 第1項 및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學 또는 大學院에 編入學을 하는 경우에는 最終學年에 編入學을 許可할 수 있다.

**第13條 (學點의 인정)** ①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大學·師範大學, 大學 또는 大學院에 編入學하는 者가 教育院에서 取得한 學點은 그 編入學하는 大學 또는 大學院의 長은 이를 당해 學校의 學點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師範大學課程의 教育院에 編入學하는 者는 당해 教育院에서 80學點을 履修한 것으로 인정한다.

③教育研修令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學點은 教育院의 學點으로 인정한다.

**第14條 (上級資格의 取得)** 教育院에서 教員研修令 第6條에 規定된 教育課程과 同一한 課程을 履修한 者는 上級資格을 取得할 수 있다.

**第15條 (入學金 및 授業料)** 教育院에 入學하는 者는 文教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學金과 授業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16條 (職員)** ①教育院에 院長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②院長은 당해 教育院이 附設된 學校의 長이 兼한다.

③教育院의 授業을 담당할 講師는 당해 教育院長이 委嘱한다.

**第17條 (學則)** ①教育院長은 당해 教育院에 相應하는 學校에 準하여 그 學則을 정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學則은 文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學則을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第18條 (講師料 支給)** 教育院의 授業을 담당하는 講師에 대하여는豫算의 범위안에서 文教部長官이 정하는 講師料를 支給한다.

**第19條 (教育經費)** 文教部長官은豫算의 범위안에서 教育院에서의 教育에 所要되는 經費(前條의 手當과 實費辨償을 포함한다)를 交付 또는 補助할 수 있다.

**第20條 (施行細則)** 이 令의 施行에 관하여

요한 사항은 文教部令으로 정한다.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b>附 則</b>							島, 竹島, 小竹島, 麥島,
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東巨汶島, 晚才島, 小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島嶼・僻地教育振興法施行令中改正의件을 이에 公布한다.							馬島, 進木島, 大馬島
大統領 朴正熙 國務總理 丁一權 國務委員 權五柄 文教部長官				<b>나. 甲 地</b>			
1968年 6月 14日				京畿道	富川郡	德積面	德積島, 文甲島, 薜爺
				"	"	"	島, 昇鳳島
				"	"	靈興面	大伊作島, 小伊作島
				"	"	大阜面	豐島, 佛島, 灰島
				"	江華郡	西島面	慶島
				忠淸南道	保寧郡	鰲川面	外煙島
				全羅北道	扶安郡	鷗島面	上旺登島, 下旺登島
				"	沃溝郡	米面	防樂島, 串里島, 飛雁
				"	"	"	島, 斗里島
				全羅南道	麗川郡	三山面	巨文島, 草島, 異竹島
				"	"	"	小鉅文島, 平島, 廣島
				"	"	華井面	達川島, 松汝自島, 大
				"	"	"	汝自島
				"	"	南面	安島, 蒼島
				"	高興郡	豐陽面	矢山島
				"	"	東江面	獐島, 蟹島
				"	"	蓬萊洞	外羅老島(曳內里, 河
				"	"	"	盤里)水落島
				"	"	道化面	支島, 竹島
				"	莞島郡	所安面	煮只島
				"	"	蘆花面	魚龍島, 長久島
				"	"	金日面	圓島, 長島, 牛島
				"	"	"	皇帝島, 德牛島, 釜島
				"	"	"	多浪島, 摄島, 許牛島
				"	靈光郡	落月面	石慢島, 鞍馬島, 大角
				"	"	"	耳島, 下落月島, 大角
				"	珍島郡	鳥島面	氏島, 松耳島
				"	"	"	高沙島, 平沙島, 加沙
				"	"	"	島
				"	務安郡	莊子面	水島, 莊子島, 夢芝島
				"	"	智島面	於義島, 包作島
				"	"	荷衣面	玉島, 長柄島, 陵山島
				"	"	"	介島, 下台島, 上台島
				"	"	"	箕島, 荷衣島
				"	"	押海面	馬山面
				"	務安郡	長山面	栗島
				"	"	安佐面	沙雉島
				慶尚北道	鬱陵郡	南面	鬱陵島
						北面	"
						西面	"
				慶尚南道	統營郡	龍南面	於義島
						欲知面	欲知島, 國島, 頭尾島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草島	全羅南道	麗川郡	長山面	島, 馬津島
		蛇梁面	樹牛島	"	"	安佐面	安佐島, 半月島, 內浦
		閑山面	每勿島, 小每勿島, 加	"	"	"	島, 朴只島, 八禽島,
			玉島	"	"	"	安昌島, 老羅島, 牛墨
	海南郡	二東面	葛島	"	"	"	島, 扶所島
乙 地				"	"	岩秦面	岩秦島, 秋浦島, 唐沙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	"	"	島, 草蘭島
京畿道	仁川市	元倉洞	細放島	"	"	押海面	牛串島, 古耳島, 梅花
"	"	景西洞	青羅島	"	"	"	島
"	華城郡	雨汀面	菊花島	"	靈光郡	落月面	上落月島
"	富川郡	北島面	長蜂島, 矢島, 茅島	"	莞島郡	薪智面	牛黃島
"	"	"	信島	"	"	古今面	草島, 荷島
"	"	龍游面	龍游島, 大舞衣島, 小	"	"	金日面	平日島, 金塘島, 身島
"	"	"	舞衣島	"	"	"	飛見島, 生日島, 忠島
"	"	靈興面	靈興島, 仙才島, 紫月	"	"	"	小浪島
"	"	"	島	"	"	青山面	青山島
"	"	大阜面	大阜島, 仙甘島	"	"	"	青長島, 茅島, 小茅島
"	"	永宗面	三木島, 鷺島, 薦佛島	"	"	樂山面	助樂島
"	江華郡	三山面	三山島	"	"	所安面	所安島, 橫看島, 塚島
"	"	西島面	西島, 夷音島, 阿此島	"	"	蘆花面	蘆花島, 老鹿島, 馬朔
京畿道	江華郡	喬洞面	喬洞島	"	"	"	島, 甫吉島, 荷島, 馬
忠清南道	保寧郡	鷺川面	長吉島, 鹿島, 孤島	"	"	"	鞍島, 石長久島, 西荷
"	"	"	插矢島	"	"	"	島, 種作島
"	瑞山郡	近興面	賈龍島, 黑島, 弓矢島	"	"	郡外面	白日島, 黑日島, 花島
"	"	"	石島	"	"	"	伺候島, 古馬島
"	"	南面	居兒島	"	珍島郡	古郡面	金湖島
"	"	安眠面	羅致島, 豆之島, 鵝島	"	"	義新面	茅島, 拘子島, 接島
"	"	地谷面	烏島	慶尚南道	統營郡	龜南面	紙島, 水島
"	"	八峰面	古波島	"	"	山陽面	楸島, 烏谷島, 昆里島
"	唐津郡	石門面	大蘭芝島, 小蘭芝島	"	"	道山里	邑島
"	舒川郡	長項邑	有夫島	"	"	欲知面	蓬島, 老大島, 納島
全羅北道	扶安郡	蠣島面	蠣島, 食島	"	"	"	蓮花島, 牛島
"	沃溝郡	米面	開也島, 煙島, 肚子島	"	"	蛇梁面	蛇梁島
"	"	"	仙遊島, 巫女島, 新待	"	"	閑山面	比珍島, 竹島, 秋峰島
"	"	"	島, 夜昧島, 內草島	"	固城郡	三山面	臥島
"	"	"	飛鷺島	"	"	下一面	自卯島
全羅南道	麗川郡	南面	金鰲島, 禾太島, 大斗	"	泗川郡	西浦面	飛鬼島
"	"	"	羅島, 大橫千島, 小斗	"	巨濟郡	一運面	只心島, 內島
"	"	"	羅島, 羅發島, 小橫千	"	"	長木面	利水島
"	"	"	島	"	"	巨濟面	山連島
"	"	華井面	上花島, 下花島, 蓋島	"	"	屯德面	花島
"	"	"	諸島, 白峰島, 狼島	"	南海郡	二東面	櫻島
"	"	"	早發島, 沙島, 屯兵島	"	"	三東面	虎島
"	"	"	汝自島, 積金島, 月湖	"	河東郡	金南面	大島
"	"	"	島, 秋島	濟州道	北濟州郡	楸子面	上楸子島, 下楸子島
"	"	都草面	都草島	"	"	"	4
"	"	長山面	長山島, 莫今島, 白也				

2. 丙 地		道 別 市・郡別 面 別 地名(島嶼・里・洞名)		道 別 市・郡別 面 別 地名(島嶼・里・洞名)	
道 別	市・郡別	面 別	地名(島嶼・里・洞名)	全羅南道	莞島郡 薦智面 薦智島
京畿道	仁川市	元倉面 栗島		"	" 古今面 古今島, 尺贊島
"	華城郡	松山面 牛音島, 漁島, 衡島		"	珍島郡 郡內面 寒衣島
"	"	西新面 濟扶島		慶尚南道	三千浦市 新樹島洞 新樹島
"	富川郡	永宗面 永宗島		"	" 勒島洞 勒島
"	江華郡	吉祥面 東檢島		"	" 馬島洞 馬島
忠清南道	保寧郡	鰲川面 古堡島, 元山島, 孝子島		"	昌原郡 熊川面 水島, 樂島, 友島
"	"	" 抽島		"	" 天加面 加德島
"	瑞山郡	安眠面 安眠島, 大也島, 看月島		"	" 龜山面 鶴島
"	"	" 黃島, 竹島, 새섬		"	" 鎮東面 羊島
"	"	地谷面 牛島, 猪島		"	統營郡 龍南面 海子島, 水島
"	"	大山面 熊島		"	" 山陽面 姜谷島, 鵬林島, 楮島
"	"	浮石面 竹島		"	" 晚地島
"	"	近興面 新津島		"	" 閑山面 閑山島, 佐島, 龍虎島
"	"	南面 竹島, 知致島, 三島		"	巨濟郡 沙等面 加助島
"	"	" 蔚美島		"	" 河清面 七川島
"	"	遠北面 民漁島		"	南海郡 三東面 彌島
"	"	梨北面 竹島		"	" 昌善面 昌善島
"	唐津郡	石門面 草落島		"	河東郡 金南面 萬島
"	"	新平面 行淡島		濟州道 北濟州郡 舊左面 牛島	
"	"	松嶽面 內島		"	" 輪林邑 飛揚島
全羅北道	高敞郡	富安面 竹島		"	南濟州郡 大靜邑 加波島, 馬羅島
"	扶安郡	幸安面 界火島			
"	沃溝郡	米面 莫蒼島			
全羅南道	木浦市	忠武洞 高下島, 許沙島, 諾島			
"	"	" 達里島, 外達島			
"	光陽郡	骨若面 松島, 獅島, 太仁島			
"	"	" 金湖島			
"	麗川郡	三日面 三千島, 猫島			
"	"	突山面 松島, 小鏡島, 大鏡島			
"	"	" 突山島			
"	"	華井面 白也島			
"	高興郡	道陽面 五馬島, 小鹿島			
"	"	過驛面 白日島, 牛島			
"	"	浦頭面 翠島			
"	"	錦山面 上花島, 下花島			
"	長興郡	大德面 老力島		"	洪川郡 西面 牟谷里一區, 吉谷里
"	康津郡	道岩面 駕牛島		"	" 東幕里
"	海南郡	花山面 三馬島, 上馬島		"	" 牟谷里二區, 馬谷里
"	"	黃山面 澄衣島		"	" 開野里
"	"	松旨面 於佛島		"	" 著村里, 紫雲里, 坊內里
"	"	山二面 錦湖島		"	" 栗田里, 美山里, 廣院里
"	靈岩郡	三湖面 羅佛島		"	橫城郡 甲川面 新垈里(새내리)
"	務安郡	望雲面 炭島, 永海島		"	寧越郡 寧越邑 巨雲里, 文山里
"	"	押海面 押海島, 佳蘭島		"	" 上東面 川坪里, 九來里
				"	" 下東面 臥石里, 內里(烏堤洞)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江原道	寧越郡	水周面	法興里, 雲鶴里, 斗山里	慶尚北道	慶山郡	龜城面	梅南里
"	"	"	桃源里(嚴屯)	"	榮州郡	丹山面	馬落里
"	平昌郡	珍富面	幕洞里, 水項里, 長田里	"	"	浮石面	南大里
"	"	蓬坪面	柳浦里	"	"	文殊面	助佛里
"	華川郡	看東面	九萬里	"	蔚珍郡	遠南面	吉谷里
"	旌善郡	旌善面	樽洞里	"	"	西面	玉邊里, 召光里, 前谷里
"	"	北面	宿岩里	"	"	"	廣回里
"	楊口郡	楊口面	公須里, 上舞龍2里	"	金陵郡	釜項面	安礪洞
"	"	南面	院里	"	"	代項面	大聖洞
"	麟蹄郡	南面	亭子里, 金富里	"	"	甑山面	修道里
"	"	麟蹄面	德積里, 加里山里	慶尚南道	密陽郡	丹場面	甘勿里
"	"	麒麟面	鎮東里, 芳東里	"	蔚州郡	上北面	梨川里
"	高城郡	杆城面	屹里	"	晋陽郡	智水面	龍奉里
"	襄陽郡	西面	西林里, 葛川里, 明開里	"	梁山郡	院洞面	善里
"	"	縣北面	綿玉峠里, 陶里	"	巨濟郡	東部面	猪仇里, 罡串里, 多大里
"	溟州郡	旺山面	大基3里, 九切里	"	河東郡	青岩面	默溪里
"	"	"	大基2里	"	"	花闌面	大成里
"	"	玉溪面	山溪里	"	咸陽郡	安義面	春田里, 上源里
"	"	連谷面	三山三里	"	山清郡	矢川面	內大里, 中山里
"	三陟郡	道溪邑	武巾里, 新里	"	"	丹城面	雲里
"	"	達德面	梧底里, 豐谷里, 杞谷里	"	"	三壯面	油坪里
"	"	"	粗川里, 沙谷里	"	"	今西面	芳谷里
"	"	下長面	道田里, 板門里, 兔山里	"	居昌郡	北上面	並谷里
"	"	"	易屯里, 楚洞里	"	"	南上面	王佛里
"	"	盧谷面	屯達里, 舟皆里, 間三里	"	"	南下面	芝山里
"	"	"	中麻邑里	"	"	高梯面	開明里
忠清北道	堤川郡	寒水面	松界里	"	"	加北面	開金里
忠清南道	公州郡	寺谷面	速宗里	計丙地			
"	"	儀堂面	道新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全羅北道	完州郡	東山面	水滿里, 聰峰里	京畿道	楊州郡	東豆川邑	傑山里
"	長水郡	蟠岩面	知止里	"	"	廣積面	比岩里
"	扶安郡	山內面	中溪里	"	"	白石面	靈場里
全羅南道	高興郡	占岩面	牛川里, 南悅里, 楊蛇里	"	"	水洞面	水山里
"	"	"	呂湖里	"	"	瓦阜面	月文里, 時雨里
"	"	道花面	九岩里	"	驪州郡	古東面	長安里, 雷谷里
"	和順郡	道岩里	牛峯里	"	"	加南面	松林里
"	長興郡	有治面	雲月里	"	"	金沙面	上品里, 下虎里, 走鹿里
慶尚北道	軍威郡	古老面	石山洞, 再建洞(재암)	"	"	大神面	上九里
"	"	召保面	沙里洞	"	坡州郡	泉峴面	直川里
"	義城郡	新平面	中栗洞	"	連川郡	全谷面	納木里
"	"	玉山面	五柳洞	"	"	官仁面	中里, 板巨里, 射亭里
"	青松郡	府東面	項洞	"	抱川郡	青山面	三政里
"	英陽郡	首比面	松下洞(岐山), 新岩洞	"	"	二東面	場岩二里
"	盈德郡	丑山面	烏項洞	"	"	永北面	大回山里, 山井里
"	"	寧海面	大洞	"	加平郡	加平面	升安里, 嶺壁里, 福長里
"	"	知品面	栗谷洞	"	"	"	開谷里, 金空里, 密里
"	迎日郡	竹長面	下玉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京畿道	加平郡	雪岳面	可逸里,彌沙里,松山里	江原道	橫城郡	晴日面	洞里
"	"	"	雪谷里,訪逸里,嚴沼里	"	"	書院面	玉溪里,石花里
"	"	外西面	高城里	"	"	公根面	於屯里
"	"	下 面	上板里,下板里,大報里	"	原城郡	所草面	鶴谷里
"	"	"	馬日里	"	"	地正面	年松里(多屯)
"	"	北 面	栢屯里,華岳里,赤禾里	"	"	富論面	鼎山里,丹江里,蕪谷里
"	"	"	道大里	"	"	"	里
"	楊平郡	江上面	洗月里	"	"	貴來面	貴來里,蘆岩里
"	"	江下面	東梧里	"	"	神林面	城南里,黃屯里
"	"	玉泉面	龍川里	"	"	好緒面	高山里
"	"	西宗面	鼎排面,西厚里,三會里	"	寧越郡	寧越邑	三玉里
"	"	"	蘆門里	"	"	上東面	稷洞里,九來一里,川坪一里
"	"	丹月面	山陰里,明星里	"	"	"	外龍里,內里
"	"	青雲面	加峴里,排源里,新論里	"	"	南 面	助田里,興月里,廣川里
"	"	"	里	"	"	北 面	恭基里,德上里
"	"	楊東面	梅月里,高松里,金旺里	"	"	西 面	釜葦里,廣錢里
"	"	"	丹石里,桂亭里	"	"	酒泉面	板雲里,桃川里
"	"	砥提面	望美里	"	"	水周面	桃源里
"	"	龍門面	花田里	"	平昌郡	平昌面	古吉里,八彈里,雷雲里
"	利川郡	栗 面	月浦里	"	"	美灘面	平安2里,琪花里,水青里
"	金浦郡	大串西	石井里,大碧里,大明里	"	"	"	桂村里
"	江華郡	吉祥里	船頭里	"	"	大和面	介水2里
"	"	華道面	興旺里,長花里	"	"	蓬坪面	柳浦1里,興亭里,綿溫里,武夷里
江原道	春城郡	東 面	上傑里,品安里	"	"	"	珍富面
"	"	新東面	沙岩里	"	"	道岩面	新基里,路洞里
"	"	南 面	芳荷里	"	旌善郡	旌善面	龍山里,榆川3里
"	"	西 面	西上里(西上),德斗院	"	"	東 面	石谷里,北澗里,乾川里
"	"	"	二里	"	"	"	稻田里
"	"	史北面	芝岩里	"	"	南 面	廣德里,樂洞二里
"	"	北山面	勿老里,照橋里,富貴里	"	"	北 面	高養里
"	"	"	里,吾項里	"	"	臨溪面	臨溪二里,高陽里,盤川里,鳳亭里
"	洪川郡	化村面	酒飲峽里,君葉里	"	"	"	新東面
"	"	斗村面	掛石里	"	"	下南面	古城里,德川里,雲峽里
"	"	瑞石面	清涼里,水下一里,水下里	"	"	"	里
"	"	"	乃村面	"	"	新東面	坊堤二里
"	"	"	和尙垈里,互野里,物傑里	"	華川郡	上西面	安坪里,啓星里
"	"	西 面	盤谷里,垈谷里,八峰里	"	"	"	九雲里
"	"	"	北方面	"	"	史內面	三逸里
"	"	"	遠所里,魯日里,居只里	"	楊口郡	楊口面	月明里
"	"	"	南 面	"	"	南 面	上水內里
"	橫城郡	安興面	講林里(一,二里),金谷里,月峴里	"	麟蹄郡	麟蹄面	南北里,院垈里,貴屯里
"	"	"	甲川面	"	"	"	下湫里,加兒三里
"	"	屯內面	雪橋里,烏項里	"	"	南 面	甲屯里,於論里,籃田1里(동아길),籃田2里
"	"	晴日面	春堂里,兵之坊里,秋	"	"	"	里(동아길),籃田2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江原道	麟蹄郡	南面	(개운동)	忠清北道	堤川郡	白雲面	雲鶴里, 德洞里
"	"	麒麟面	北里 2 里, 上南面(1 2里), 西里	"	丹陽郡	大崗面	龍夫院里, 兀山里, 傍 谷里
"	高城郡	土城面	桃院里, 新坪里	"	"	佳谷面	寶發里, 麗川里, 丈大里
"	"	竹旺面	九城里	"	"	永春面	儀豐里, 遊岩里, 斜只 院里, 東大里
"	襄陽郡	西面	公須田里, 五加里	"	"	魚上川面	德文谷里
"	"	襄陽面	禾日里	"	"	赤城面	基洞里, 大加里
"	"	縣北面	漁城田里	忠清南道	錦山郡	濟原面	吉谷里
"	"	縣南面	下月川里	"	"	郡北面	上谷里
"	溪州郡	旺山面	旺山里	"	"	南二面	乾川里
"	"	城山面	普光里	"	"	珍山面	石幕里
"	"	連谷面	退谷里, 三山里(1, 2 里)	"	"	富利面	坪村里
"	"	"	沙川面	"	燕岐郡	金東面	金沙里
"	"	江東面	沙器幕里	"	"	錦南面	永岱里
"	"	注文津邑	林谷里	"	"	西面	双流里
"	三陟郡	北坪面	三赤里, 新興里, 飛川里	"	公州郡	儀堂面	台山里
"	"	道溪邑	大基里, 店里	"	"	寺谷面	月河里
"	"	遠德面	理川里	"	"	牛城面	鳳峴里, 竹堂里
"	"	下長面	番川里, 中峰里	"	"	鶴龍面	乃興里
"	"	蘆谷面	下月山里	"	"	灘川面	加尺里, 見東里, 大鶴里
"	"	未老面	活耆里, 古川里, 內未	"	"	友浦面	元峰里
"	"	"	老里	"	扶餘郡	恩山面	巨田里
忠清北道	忠州市	宗民洞	宗民洞	"	"	南面	檜洞里
"	清原郡	文義面	後谷里	"	"	外山面	飛岩里
"	"	琅城面	葛山里	"	"	良化面	時音里
"	報恩郡	懷北面	馬東里	"	保寧郡	帽山面	鳳山里, 大農里
"	"	內俗離面	三佳里, 北岩里	"	"	熊川面	小簷里
"	沃川郡	東二面	青馬里	"	瑞山郡	雲山面	院平里
"	"	伊院面	牛山里	"	"	梨北面	內里
"	"	青城面	貓金里	"	"	大山面	吾池里, 獨串里, 花谷里
"	"	安內面	蘿村里	"	"	遠北面	防萬里, 新斗里
"	"	郡北面	楸沼里	"	"	奉安面	漁隱里
"	永同郡	永同邑	上高子里, 深源里	"	"	所遠面	波濤里, 蟻項里, 所斤里
"	"	龍山面	扶桑里	"	青陽郡	大峙面	上甲里, 長谷里
"	"	上村面	勿閑里, 大海里, 奧德里	"	唐津郡	大湖芝面	沙城里
"	"	楊江面	山幕里, 九江里	"	"	牛江面	內鯨里, 富長里
"	"	鶴山面	池內里	"	"	沔川面	竹東里
"	"	深川面	吉峴里, 耆湖里	"	天原郡	北面	納安里
"	"	龍化面	肇東里, 紫溪里	"	"	東面	花德里
"	"	陽山面	加仙里, 虎灘里	全羅北道	莞州郡	華山面	雲山里, 升峙里, 春山里
"	中原郡	利柳面	梅峴里	"	"	飛鳳面	大峙里
"	"	東良面	花岩里	"	"	東山面	新月里, 大雅里
"	"	塗味面	公耳里	"	"	雲州面	姑堂里
"	"	上莞面	彌勒里, 上界里	"	鎮安郡	白雲面	507
"	"	清風面	鶴峴里, 長善里				
"	"	松輪面	五味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全羅北道	鎮安郡	富貴面	黃金里	全羅南道	光陽郡	多鴨面	錦川里
"	"	聖壽面	求臣里	"	"	玉龍面	東谷里
"	"	朱川面	武陵里, 大佛里	"	"	津上面	於峯里, 黃竹里
"	"	程川面	鳳鶴里	"	"	玉谷面	大竹里
"	"	彦川面	三樂里	"	"	鳳岡面	鳥嶺里
"	茂朱郡	赤裳面	馬山里, 梨洞里	"	麗川郡	召羅面	福山里, 沙谷里
"	"	茂豐面	三巨里, 深山里	"	"	華陽面	長水里, 安浦里, 玉笛里
"	"	"	大佛里	"	昇州郡	樂安面	金山里, 昌寧里
"	"	富南面	大柳里	"	"	別良面	大龍里
"	長水郡	長水面	德山里	"	"	上沙面	道月里, 雙之里
"	"	蟠岩面	洞花里, 紗岩里	"	"	黃田面	回龍里, 平村里
"	"	溪北面	林坪里	"	"	月燈面	望龍里
"	"	天川面	臥龍里, 蓮坪里, 蓮花里	"	高興郡	占岩面	錦蛇里
"	南原郡	河英面	日培里	"	寶城郡	筏橋邑	永登里, 長岩里
"	"	東面	乾芝里	"	"	得根面	飛鳳里
"	"	雲峰面	舟村里	"	"	蘆洞面	錦湖里, 翠石里
"	"	德果面	龍山里	"	"	文德面	龍岩里
"	"	山內面	內靈里, 德洞里, 溪雲里	"	"	栗放面	梨洞里, 船岩里
"	"	帶江面	生岩里	"	"	兼白面	雲林里
"	淳昌郡	双直面	新成里, 鶴仙里	"	和順郡	道岩面	鳳下里, 龍江里
"	"	東溪面	壽牆里	"	"	梨陽面	墨谷里
"	"	金果面	木洞里	"	"	東面	馬山里, 水萬里, 玉壹里
"	"	龜林面	錦川里	"	"	同福面	榆川里, 佳水里
"	任實郡	雲南面	龍雲里, 青雲里, 鶴岩里	"	"	春陽面	月坪里
"	"	新德面	照月里	"	"	二西面	永坪里
"	"	任實面	里仁里	"	"	北面	芳里, 盧時里
"	扶安郡	上西面	青林里	"	長興郡	寒泉面	寒溪里
"	"	山內面	道清里	"	"	蓉山面	上鉢里
全羅南道	順天市	三巨洞	三巨洞	"	"	長坪面	長坪面
"	潭陽郡	南面	外東郡, 仁岩里	"	"	大德面	朔金里, 龐岩里
"	"	大德面	立石里, 葛田里	"	"	冠山面	叩馬里
"	谷城郡	竹谷面	鳳停里, 桐溪里	"	"	有治面	大川里
"	"	"	太平里	"	海南郡	海南邑	邑內四里
"	"	梧谷面	明山里	"	"	松旨面	桶湖里, 松湖里
"	"	木寺洞面	坪里	"	"	花源面	厚山里, 花峰里, 梅月里
"	"	玉莫面	合江里	"	"	玉泉面	龍洞里
"	"	立面	齊月里	"	"	花山面	平湖里
"	求禮郡	文尺面	中山里	"	"	溪谷面	新坪里
"	"	上旨面	文殊里, 內西里	"	"	北平面	內洞里
"	"	艮田面	中大里, 孝谷里	"	靈岩郡	金井面	青龍里
				"	"	鶴山面	隱谷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全羅南道	靈岩郡	新北面	鶴洞里	慶尚北道	安東郡	吉安面	枝洞, 龍溪洞
"	"	始終面	新鶴里	"	青松郡	府東面	羅洞
"	"	都浦面	永湖里	"	"	眞寶面	基谷洞
"	"	美岩面	好浦里	"	"	府南面	花場洞, 中基洞, 泥峴洞
"	羅州郡	山浦面	新道里	"	"	安德面	紙所洞, 老萊洞
"	"	鳳凰面	德谷里	"	"	縣西面	水洛洞
"	"	老安面	柳谷里	"	英陽郡	首比面	松下洞, 本新洞, 水下洞
"	咸平郡	海保面	大角里	"	"	立岩面	琴鶴洞
"	"	新光面	東井里	"	"	日月面	龍化洞, 楠里洞
"	"	大潤面	西湖里	"	"	石保面	素溪洞, 做南洞
"	"	鶴橋面	上玉里	"	"	青杞面	九梅洞, 上青洞
"	長城郡	西三面	鷺岩里	"	盈德郡	盈德面	石洞
"	"	東化面	月山里	"	"	柄谷面	角里
"	"	森西面	小龍里, 石馬里	"	"	蒼水面	寶林洞
"	"	黃蘆面	通安里	"	"	知品面	其思洞
"	"	北下面	大岳里	"	"	丑山面	七星洞, 景汀洞, 華川洞
"	"	北二面	晚舞里	"	迎日郡	竹長面	佳士里, 斗麻里, 上玉
"	珍島郡	郡內面	箭頭里	"	"	"	里, 上舍里
"	"	古郡面	香洞里	"	"	神光面	基日洞
"	"	臨准面	竹林里	"	"	烏川面	陳田洞
"	"	智山面	加鶴里, 加時里, 五柳里	"	月城郡	西面	道里, 松山里
"	"	義新面	草平里	"	"	陽北面	權伊里
慶尚北道	大邱市	東區	凡勿洞	"	"	內南面	飛只里
"	達城郡	嘉昌面	亭塲洞	"	"	山內面	大賢里, 日富里, 牛羅里
"	軍威郡	古老面	重建洞	"	"	陽南面	石邑里, 上溪里
"	義城郡	丹村面	龜溪洞	"	星州郡	修倫面	白雲洞
"	"	春山面	金伍洞	"	"	龍岩面	竹田洞
"	"	玉山面	全興洞, 實業洞	"	"	金水面	舞鶴洞
"	"	丹密面	八燈洞	"	"	側川面	新界里
"	"	新平面	萬里洞, 月沼洞, 橋安洞	"	"	草田面	月谷洞
"	安東郡	禮安面	三溪洞, 仁溪洞, 合谷洞	"	"	碧珍面	龍岩洞
"	"	南後面	下阿洞, 古上洞	"	永川郡	奉北面	龜內洞
"	"	祿轉面	祿來洞, 莫峴洞	"	"	古鏡面	五柳洞
"	"	陶山面	佳松洞	"	慶山郡	龍城面	龍川洞
"	"	臨東面	大谷洞, 滑洞	"	"	安心面	梅餘里
"	"	臨河面	楸木洞	"	高靈郡	茶山面	伐知洞, 蘆谷洞
"	"	豐山面	晚雲洞	"	漆谷郡	架山面	架山洞
"	"	臥龍面	西峴洞	"	"	技川面	白雲洞
"	"	豐川面	漁潭洞	"	金陵郡	飯山面	長田里
"	"	月谷面	羅新洞, 桂谷洞	"	"	知禮面	蔚谷里
"	"	北後面	薪田洞, 月田洞	"	"	大德面	內甘里
"	"	吉安面	松仕洞, 知禮洞, 大谷洞	"	"	助馬面	新谷洞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慶尚北道	善山郡	桃閑面	青山洞	慶尚南道	宜寧郡	華井面	華陽里, 上二里
"	"	長川面	五老洞	"	"	芝正面	柳谷里, 白也里
"	尚州郡	化北面	中納里, 中伐里	"	"	嘉禮面	介承里
"	"	外西面	禮儀里	"	昌寧郡	昌寧邑	玉泉里
"	"	銀尺面	黃嶺里	"	"	城山面	雲峰里, 蓮塘里
"	"	中東面	回上里	"	"	大合面	木丹里
"	"	功西面	孝谷里, 于下里	"	密陽郡	丹場面	古禮里
"	"	牟西面	井上里	"	"	上東面	新谷里
"	聞慶郡	東魯里	鳴田里, 生達里, 石項里	"	"	武安面	華封里
"	"	籠岩面	宮基里, 內西里	"	"	清道面	社谷洞, 古法里
"	"	加恩面	萬田里	"	梁山郡	院洞面	花濟里, 內浦里
"	"	聞慶面	中坪里	"	東萊郡	鼎冠面	屏山里
"	"	永順面	末應里	"	"	西生面	大松里
"	醴泉郡	普門面	山城洞	"	蔚州郡	斗西面	鮮湖里, 內瓦里
"	"	上里面	古項洞	"	"	青良面	新里
"	"	知保面	馬山洞	"	"	彦陽面	大谷里
"	榮州郡	丹山面	坐石里	"	昌原郡	龜山面	深里, 麻田里, 玉溪里
"	"	平恩面	川本里	"	"	鐵田面	時樂里
"	"	長壽面	星谷里	"	統營郡	山陽面	豐和里, 彌南里, 新田
"	"	豐基面	三街洞	"	"	"	里, 延命里, 永運里
"	"	安定面	龍上里	"	"	道山面	水月里, 猪山里
"	"	順興面	襄店里	"	"	光道面	龍湖里, 竹林里
"	奉化郡	小川面	汾川里, 南回龍里	"	忠武市	林坪洞	林坪洞
"	"	"	斗音里, 古善里, 石浦里	"	巨濟郡	長木面	長湖里, 舊永里, 柳湖
"	"	"	大峴里	"	"	"	里, 外浦里, 松興浦里
"	"	明湖面	新羅里, 三洞里	"	"	巨濟面	法東里, 票浦里, 加背
"	"	"	北谷里	"	"	"	里, 鶴洞里
"	"	才山面	葛山里, 東面里	"	固城郡	屯德面	上洞里
"	"	祥雲面	文村里, 斗月里	"	"	會華面	梧新里
"	"	物野面	水息里, 皆丹里	"	"	三山面	豆布里
"	"	"	梧田里	"	"	下二面	德明里
"	"	法田面	納山里	"	"	東海面	龍亭里
"	"	春陽面	牛口峰里	"	"	大可面	楊化里
"	蔚珍郡	溫井面	操琴里, 仙味里	"	南海郡	三東面	松亭里, 凤花里
"	"	近南面	九山里	"	"	南面	虹蜺里
"	"	箕城面	三山里, 芳票里	"	"	二東面	良阿里
"	"	西面	雙田里, 廣回里	"	河東郡	花開面	凡旺里
"	"	遠南面	葛錦里	"	"	赤良面	東里, 牛溪里
"	"	北面	下塘里, 古木里	"	"	金南面	方項里
"	"	"	蘇谷里	"	"	辰橋面	月靈里
"	"	蔚珍面	花城里	"	"	玉宗面	斗陽里
慶尚南道	宜寧郡	洛西面	井谷里	"	山淸郡	丹城面	召南里, 默谷里
				"	"	梧釜面	梧田里
				"	"	生草面	邱坪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慶尚南道	山清郡	矢川面	內公里	江原道	鐵原郡	西面	互水里, 清陽里
"	"	山清面	尺旨里	"	"	"	道昌里
"	"	車黃面	法坪里	"	華川郡	近南面	馬峴里
"	"	新安面	屯鐵里	"	楊口郡	上西面	山陽里
"	咸陽郡	馬川面	九楊里, 三亭里	"	"	東面	八郎里
"	"	咸陽邑	雲谷里	"	麟蹄郡	方山面	縣里, 五味里, 天尾里
"	"	瓶谷面	元山里	"	高城郡	瑞和面	縣里
"	咸陽郡	栢田面	白雲里	"	"	縣內面	馬達里
"	"	西上面	上南里	乙 地			
"	"	安義面	草東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	"	水東面	道北里	京畿道	坡州郡	炭縣面	萬塊里, 金塊里
"	居昌郡	北上面	月星里, 蘇牛里	"	"	"	杻塊里
"	"	渭川面	茅東里	"	"	交河面	多栗里
"	"	神院面	中榆里, 大幌里	"	"	積城面	長坡里
"	"	加祚面	道里	"	漣川郡	漣川面	上一里
"	"	加北面	中村里, 牛惠里	"	"	新西面	道新里, 新炭里
"	陝川郡	雙冊面	下新里	"	"	帽山面	牛井里, 柳村里
"	"	赤中面	券惠里, 墓方里	"	金浦郡	月串面	開谷里
"	"	佳會面	中村里	"	江華郡	江華面	大山里
"	"	德谷面	壯里, 鶴里	"	"	河帖面	陽五里
"	"	鳳山面	苧浦里	"	"	松海面	率丁里
"	"	栗谷面	中山里	"	"	兩寺面	橋山里, 德下里
"	"	陝川面	長溪里	江原道	鐵原郡	金化邑	鵝沙里
"	"	青德面	所禮里, 城台里	"	"	東松面	五德里
濟州道	北濟州郡	朝天面	橋來里	"	"	葛末面	內垈里
"	"	舊左面	松堂里, 德泉里	"	"	近南面	大丹里, 雲谷里
"	"	涯月面	於音里	"	華川郡	華川面	新邑里, 東村里
"	南濟州郡	表善面	城邑里	"	"	"	東村二里
"	"	安德面	東廣里, 上川里, 西廣里	"	"	上西面	峰吾里, 多木里
3. 接敵地區							
4. 特地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京畿道	坡州郡	臨津面	造山郡(台城洞)	"	陽口郡	楊口面	上舞龍里, 軍糧里
5. 甲地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京畿道	漣川郡	百鶴面	百嶺里, 薦谷里	京畿道	坡州郡	交河面	東牌里
"	"	"	元堂里, 斗日里	"	"	坡平面	斗浦里
"	金浦郡	月串面	甫口串里	"	"	積城面	佳月里, 容峴里
"	"	霞城面	麻造里	"	"	"	赤岩里, 食峴里
"	江華郡	兩寺面	北省里	"	"	"	馬知里
江原道	鐵原郡	葛末面	土城里	"	漣川郡	郡南面	三巨里, 玉溪里
"	"	鐵原邑	大馬里, 月下里	"	"	"	旺林里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江原道	鐵原郡	鐵原邑	花地里
"	"	東松面	二坪里, 長興里
"	"	"	上路二里
"	"	葛末面	文惠里, 垦谷里
"	"	西面	自等里
"	華川郡	華川面	豐山里
"	"	看東面	芳川里
"	"	上西面	盧洞里
"	"	史內面	明月里, 廣德里
"	麟蹄郡	北面	月鶴里, 寒溪里
"	"	"	龍垈里
"	"	瑞和面	天桃里, 瑞興里
"	高城郡	巨津面	松亭里, 慈山里
"	"	"	巨津里
"	"	縣內面	大津里, 竹亭里
"	"	"	草島里
"	"	杆城面	長新里

## 4. 收復地區

## 가. 乙 地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江原道	鐵原郡	葛末面	新鐵原里

## 나. 丙 地

道別	市・郡別	面別	地名(島嶼・里・洞名)
京畿道	連川郡	官仁面	炭洞里, 冷井里
"	"	連川面	古文里, 通峴里
"	抱川郡	二東面	都坪里, 盧谷里
江原道	華川郡	華川面	新邑里
"	"	下南面	居禮里
"	楊口郡	楊口面	晴里, 笛里
"	麟蹄郡	麟蹄面	加峴一里, 古沙里
"	"	麟蹄面	下南里, 上南里
"	"	南面	斗武里, 新月里
"	高城郡	杆城面	廣山里
"	"	巨津面	草溪里
"	"	土城面	仁興里
"	襄陽郡	降峴面	回龍里, 積銀里
"	"	西面	龍川里
"	"	巽陽面	松田里

[別表 2]

## 島嶼・僻地手當支給額表

級	地	支給額	區分	備考
特	地	2,500	月定額	
甲	地	2,000	"	
乙	地	1,500	"	
丙	地	1,000	"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映畫法施行令中改正의件  
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朴正熙

1968年6月14日

國務總理 丁一權

國務委員 公報部長官 洪鍾哲

◎大統領令第3,485號

映畫法施行令中改正의件

映畫法施行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前條의 規定에 의한 映畫製作者의 登錄申請  
을 하자 하는 者중 그 製作할 映畫의 種  
類가 文化映畫(뉴스映畫를 포함한다)인 者는 다  
음 각號의 機器를 所有하여야 한다.

1. 35밀리미터 이상의 摄影機 1臺 이상.
2. 總性能 50킬로와트 이상의 照明機.

第2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者 이외의  
映畫製作者는 다음 각號의 機器를 所有하여야  
한다.

1. 35밀리미터 이상의 摄影機 1臺 이상.
2. 總性能 20킬로와트 이상의 照明機.

第11條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 (輸入推薦基準) ①外國劇映畫의 輸入推薦  
은 당해年度의 貿易計劃과 法 第19條第4項의 規  
定에 의하여 輸入할 수 있는 映畫篇數의 범  
위 안에서 이를 행한다.

②法 第9條第2項 各號에 해당하는 映畫는 劇  
映畫와 劇映畫에 準하여 上映할 수 있는 文  
化映畫로 한다.

③法 第9條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國產映畫 및  
合作映畫의 輸出은 公報部長官이 정하는 輸出  
價格 이상으로 輸出되고, 輸出推薦을 받은 날  
로부터 2年 이내에 그 輸出地域안에서 상당  
한期間 이상을 有料로 上映되었음이 公報部  
長官에게 申告된 映畫의 輸出로 한다.

④前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合作映  
畫의 輸出은 第8條의 規定에 準하여 公報部  
長官의 輸出recommend을 받은 輸出로 하며 그 輸  
出地域은 당해 合作映畫의 製作契約에서 約定  
된 上映地域 이외의 地域으로 한다.

⑤公報部長官은 法 第9條第1項과 第2項의 規  
定에 의한 外國映畫의 輸入recommend에 관  
する 13細部  
計劃을 作成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572

第17條第1項中 “映畫製作者가”를 刪除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 (映畫의 범위)** ①法第7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서 “年間2篇”이라 함은 1時間이상 繼續上映될 수 있는 劇映畫 또는 文化映畫 2篇을 말한다. 다만, 廣告映畫製作者에 있어서는 廣告映畫 2篇으로 한다.

②法第19條第4項의 規定에서 “外國映畫”라 함은 外國劇映畫를 말하며, “당해年度의 國產映畫”라 함은 당해 年度에 映畫檢閱을 받고 合格한 國產劇映畫를 말한다.

#### 附 則

①(施行日) 이 습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規定)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期間의 適用에 있어 이 令 施行當時에 輸出推薦된 映畫에 대하여는 그 “2年”的期間은 다음의 区分에 의한期間으로 한다.

1. 1966年12月31日 이전에 輸出推薦된 映畫는 이 令 施行日로 부터 6月이내.
2. 1967年1月1일부터 同年 12月31日 사이에 輸出推薦된 映畫는 이 令 施行日로 부터 1年이내.
3. 1968年1月1日 이후에 輸出推薦된 映畫는 이 令 施行日로 부터 2年이내.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친 物品稅法施行令中改正의件을 이에 公布한다.

大統領 朴正熙

1968年6月14日

國務總理 丁一權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黃鍾律

#### ◎大統領令第3,486號

##### 物品稅法施行令中改正의件

物品稅法施行令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1. 第1種 第1類 第5號의 가中 “(1個의 價格 20,000원, 1組의 價格 30,000원 이상의 것에 限한다)”를 “(1個의 價格 50,000원, 1組의 價格 70,000원 이상의 것에 限한다)”로 한다.

#### 附 則

이 습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한령

#### ◎國防部訓令第106號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968年6月11日

國防部長官 崔榮喜

다음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中改正의件

軍事保安業務施行規則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②最初의 秘密取扱認可(資格認可)는 身元調查回報書에 의하여 特命으로 措置하고 各機關의 保安擔當官은 個人記錄카드에 記錄된 秘密取扱認可內容을 確認하여 該當 秘密取扱認可權者가 秘密取扱認可證을 交付한다. 다만 秘密取扱의 等級을 달리할 때에는 特命으로서 認可하여야 한다.  
③戰時, 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事態에 있어서 召集된 豫備役將兵에 대하여 軍事秘密事項을 急速히 取扱하여야 할 경우에는 第8條1項의 規程을 準用하여 前人事記錄카드를 確認하고 秘密取扱을 認可할 수 있다.

다만, 認可日로 부터 10日內에 身元調查를 行하여야 한다.

第13條第1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2項中 “秘密取扱認可를 解除할 때에는 下日命令으로 措置하고”를 “秘密取扱이 必要하지 않을 때에는”으로 한다.

①規程 第8條第3項第1號의 경우에는 特命으로서 秘密取扱認可를 解除하고 秘密을 取扱하는 職責으로부터 解任시켜야 한다. 다만, 除隊, 罷免, 除籍, 死亡, 免職等 軍籍에서 解任된 者는 同根據命令에 依據 秘密取扱認可가 解除될 것으로 본다.

第21條第1項第3號를 第4號로 하고 第3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며 第4項을 第5項으로 하고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3. 作戰地域에서 保管中인 秘密이 作戰上 不必要하다고 認定될 때

④前1項3號에 의하여 秘密을 破棄할 때에는 所屬部隊長의 裁可를 得한 後에 實施한다.

第52條中 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書式에 依한 身元陳述書 1部

가. 任官豫定者(別紙第15號書式)

나. 士兵(別紙第15-1號書式)

다. 軍屬 및 軍斗 關聯있는 民間人(別紙第15-2號書式)

라. 現役將校 및 准士官(別紙第15-3號書式)

#### 附 則

이 습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573

14

비밀취급구분	
I	II
인가 년월일	

## 신원진술서 (15-1)

사

1.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서약란을 읽을 것.
2.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여 한자로 자필하고 정서로 쓸 것.
3.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4. 모든 주소지는 반드시 통, 반, 호수까지 세밀히 기입할 것.

진

※ 원적……이복출신은 복한의 본적, 전적자는 전적전의 본적을 기입.  
 이명……창씨명, 아명, 예명, 속명 등 명예상 차오된 성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기입.  
 본관……김해, 전주, 안동 등으로 호적상 본관을 기입.

성명	생년월일	이명
군번	계급	국적
원적		본관
본적		성별 남녀
주소	통반	전화( )
소속		
최기경찰서	최기우체국	

※ 혈액형, 마약중독, 정신병 등은 해당란에 ○표를 한다.

흉터……신체에 노출된 부분이나 음폐된 부분의 상처라 할지라도 전상흔(戰傷痕), 화상흔(火傷痕), 종률흔(腫物痕), 수술흔(手術痕) 등으로 기입하고 상처의 위치를 복부, 안부 등으로 명시한다.

시력……자기의 시력을 기입하고 안경착용 유무를 명기한다. “예” 좌 0.5, 우 0.5 안경착용  
 유전병……색맹, 근시, 폐결핵, 나병 등으로 해당 있으면 기입한다.

의치……의치를 하였으면 “상” “하” 해당란에 의치종류 및 숫자를 명시한다.  
 “예” 금이 2, 백금이 3.

사투리(방언)…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서울 표준말 등으로 명기한다.

신체상 특징	혈액형	신장	체중	마약중독	알콜중독	정신병	유전병
	A, B, O, AB	cm	kg	유무	유무	유무	유무
흉터							
시력	좌	우		안경착용	유무	사투리(방언)	
의치	상치				하치		

※ 군입대 관계…현명예상의 내용을 기입하고 입대등기는 지원, 징집 등으로 구분한다.

정당단체관계…정당 및 사회단체는 물론 재학당시의 각종 써클, 가입사실을 필히 포함한다.

특기…개인적 습득한 기술로 운전, 전축, 타자, 사진기술, 운동 등의 숙달정도에 따라 기입한다.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등으로 약기하고 숙달정도는 독서, 회화, 번역의 해당란에 ○표를 하고 배운 기간을 “연”수로 표시한다.

재산정도…상속(유산) 받은 재산과 자기가 축재한 재산을 구분 기입한다.

문화시설…각 해당란에 ○표를 한다.

군관 입 대 계	입대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특 기	종 별	숙달정도	기 간
	부대 및 학교명					
	입대등기					
	훈련기간					
기별		외국어	독서 회화 번역		년	
			독서 회화 번역		년	

15

임정 당 단체 판 전계	가입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취 비  기 호 물	영화감상, 음악감상, 독서					
	정당단체명					등 산, 수 렵, 뉴 사					
	가입동기					당 구, 바 둑, 장 기					
	부서및직위					주 량	홈				
	탈당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홈 연	1 일				
	탈당동기					본					
종교 관 계	신앙년월일	서기 19 년 월 일			재 산 정 도	구 분	동 산	부동산	계	생활정도  상 중 하	
	종교별					유산(상속)	원	원	원		
	교회및사찰명					자기 축재	원	원	원		
	신앙동기					제	원	원	원		
	종교적직위					생 계 책 임 자					
						속병	성명 (년)				
<p>※ 대 상...내외국 병력을 포함하고 재복무자는 전병력을 기입한다.</p> <p>제대구분...의가사, 만기, 의병, 제적 등으로 기입</p> <p>비고란...기타 참고사항을 기입한다.</p>						구 분					
전 병 력	기 간	국명	병 파	부 대 명	제 대 구 분	최종계급	군 번	비 고			
	부 터 까 지										
<p>※ 기 간...국민학교 입학으로부터 최종학교 및 경력을 연차순으로 누락없이 기입한다.</p> <p>기 관 명...해당기관명 및 직장명을 기입한다.</p> <p>기록사항...학력...학력은 ○○회 ○○과 ○년수로 또는 ○○과 ○년 총퇴라고 구체적으로 기입.</p> <p>{ 학력...학력은 ○○회 ○○과 ○년수로 또는 ○○과 ○년 총퇴라고 구체적으로 기입.</p> <p>기록사항...부서 및 직위명을 필히 명시하고 의원사직 또는 면직등으로 구분기입한다.</p> <p>소재지...학교 및 직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기입한다.</p> <p>거주지...해당학교 재학 및 재직 당시 거주지를 명시하되 하숙 또는 자취를 하였을 시는 주인의 직업 성명을 명시하고 부모와 동거 하였을 시는 부모와 동거라고 기입한다.</p>											
학 력 및 경 력	기 간	학교 및 기관명			기록사항	소재지	거주지				
	부 터 까 지										

※ 가족 관계…17세 이상 사망자 및 6·25 당시 행방불명자는 적색으로 기입한다.  
 혈통…해당란에 해당숫자를 기입한다.  
 문벌…출생인물의 숫자를 표시한다.  
 실직…동일호적내의 전월을 기입한다(출가한 자매 및 상처, 이혼한 전처도 필히 포함).  
 근친…4촌 이내의 친척으로(3촌, 친 4촌, 외 4촌, 고종 4촌, 내종 4촌 순)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실가족 기록요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기입한다.  
 처가…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부모 형제등을 기입한다.  
 ※ 상처, 이혼등으로 재혼하였을 시는 전처, 후처의 처가를 공히 기입한다.  
 수학정도…출신학교 및 전공과목을 기입한다.  
 직장 및 직위…공무원, 회사원, 접원을 막론하고 직장명 및 직위를 필히 명기한다.  
 정당사회}…정당 및 사회단체명과 부서 및 직위와 소재지를 명기한다.  
 단체 및 직위  
 비고란…결혼구분은 중매, 연애, 재혼, 축첩등으로 간명하고, 이복형제등은 “이복”으로 명기한다.

가	족	사	학	관	계	성	명	연	명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및 직위	정당사회 단체 및 직위	거주지	비고	남매의	차																														
																출	세	정	치	가	군	인	법	관	공	부	원	언	론	인	예	술	가	교	육	가	상	업	공	업	광	업	농	업	수	산	업
																실	가																														
가	족	사	학	관	계	성	명	연	명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및 직위	정당사회 단체 및 직위	거주지	비고																																
가	족	사	학	관	계	성	명	연	명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및 직위	정당사회 단체 및 직위	거주지	비고																																
가	족	사	학	관	계	성	명	연	명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및 직위	정당사회 단체 및 직위	거주지	비고																																
가	족	사	학	관	계	성	명	연	명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및 직위	정당사회 단체 및 직위	거주지	비고																																
근	친																																														
17																																															

	관 계	성 명	연 령	수 학 정 도	직 장 및 직 위	종 교 및 지 위	정당사회단체 및 지위	거 주 지	비 고
근 친									
외									
가									
처									
가									

※ 보증인 및 추천인...임대시 보증인 및 추천인이 있는자는 당시의 보증인 및 추천인을 기입하며 임대시 보증인 및 추천인이 불필요한 사병은 실제자기률 보증할 수 있는 자를 선택 기입한다(부, 형 또는 가급적 저명한 인사).

교 우...다년간 교제한 교우중에서 가장 친근한 친우를 기입하여 등향, 종교교, 대학, 사회  
직장 친구 등으로 구분하고 동일 소속에서 근무하므로 알게된자는 제외.

해 외 여 행...임대전후 시찰, 견학, 교육파견, 파월, 위문, 민간학교유학, 기타 등으로 구분 기  
입한다.

	관 계	성 명	연 령	수 학 정 도	직 장 및 직 위	종 교 및 지 위	정당사회단체 및 지위	전 과	거 주 지	비 고
보 증 인										
추 천 인										
교 우										

해 외 여 행	기 간		국 명	여 행 목 적	체 류 자
	부 터	까 지			

※ 1945. 8. 15이후 본인 및 실가족이 전전한 거주지를 간단없이 연차순으로 기입한다.

8·15 이 후 거 주 지	기 간	거 주 지	당 시 호 주	전 체 차 유
	부 터	까 지		

※ 군입대전후,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부대등에서 수여받은 훈장, 표창장, 감사장을 기입한다.

상 훈 관 계	보 상 명 칭	수여자 및 기관명	일 시	장 소	유 종 내 용

※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누락없이 기입한다.

“예” 특수절도 서울고등법원 67. 10. 1 마포교도소 징역 3년 복역  
폭행 종로 경찰서 67. 10. 1 종로서유치장 7일간 구치후 3,000원 벌금

전 과 및 처 벌	사 유 (죄명)	기 관 명	일 시	장 소	처 분 별

※ 가족 또는 친족중(4촌이내) 복한 및 해외 거주자가 있으면 가족관계란과 동일요령으로 기입.

복 한 및 해 외 거 주 가 족 및 친 척	관 계	성 명	연 령	수 학 정 도	직 장	및 직 위	종교 정당 사회단체 및 직 위 전 과	거 주 지	비 고

※ 좌익계활동…본인은 물론 가족 및 친척과 교우중에서 8·15이후 현재까지 공산당 및 좌익 기타 비 합법 단체에 가입사실이 있다면 인적사항, 가입년월일, 장소, 단체명, 동기 부서 및 직책, 활동 사항 등을 6하원칙에 의거 누락없이 기입.

부 역 사 실…본인은 물론 가족 및 친척 중에서 6·25 당시 남하 피난치 못하고 부역한 사실이 있으면 위 항의 요령에 의거 6하원칙에 의거 기입.

좌익계로부 터 피 해…6·25전후 가족 및 친척 중에서 좌익계로부터 남치, 살해, 기타 해당한 사실이 있으면 위 항의 요령에 의거 기입.

좌 익 계 활 동	
부 역 사 실	
좌 익 계 로 부 터 피 해 사 항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에 허위 및 고의적인 은의 사실이 발견된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진술자	계급	군번	성명	인
-----	----	----	----	---

※ 입회판(보안 담당관 및 보관 책임판) 및 확인판은 진술 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없는가를 검토후 계급, 군번,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작성시 입회판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인
----	----	----	---

확인판	소속	방첩대
계급	군번	성명

20  
인

비밀취급구분

I II  
인가년월일

## 신원진술서 (15-2호)

사

진

1.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서약란을 읽을 것
2.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여 한자로 자필하고 정서로 쓸 것
3.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4. 모든 주소지는 반드시 통, 반, 호수까지 세밀히 기입할 것

\* 원 적...이복출신은 북한의 본적, 전적자는 전적전의 본적을 기입  
 이 명...창씨명, 아명, 예명, 속명등 병적상 착오된 성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기입  
 본 관...김해, 전주, 안동 등으로 호적상 본관을 기입

성명	생년월일	이명	신장	cm
원적		국적	체중	kg
본적		본관	성별	남녀
주소		종교	혈액형	A, B, O, AB
소속		취미	흡연	1일
출생구분	적자, 서자, 사생아, 고아	기호	주량	흡
결혼관계	미혼, 기혼(중매, 연애, 조혼)	이혼횟수	회축첩여부	유무

\* 대상...내외국 병력을 포함하여 장교 및 사병으로 근무시 근무기간  
 제대구분...의가사, 만기, 의병, 계적, 연령정년, 계급정년  
 비고...기타 참고 사항

전병력	기간	국명	병과	부대명	제대구분	최종계급	군번	비고

\* 기간...국민학교 입학으로부터 최종학교 및 경력을 연차순으로 누락없이 기입한다.  
 기관명...해당학교명 및 직장명을 기입한다.  
 기록사항...[학력...학력은 ○○회 ○○과 ○년 수료 또는 ○○과 ○년 중퇴라고 구체적으로 기입  
 비고...학교 및 직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기입한다.

학력	기간	학교명	수학정도	성적	특기과목	소재지
	부터까지					
경력	기간	직장명	직위	퇴직이유	소재지	
	부터까지					

※ 가족관계  
    실가..... 17세 이상 사망자 및 6·25 당시 행방불명자는 적색으로 기입한다.  
    동일 호적내의 전원을 기입한다. (출가한 자매 및 상처, 이혼한 전처  
    도 필히 포함)  
    근친..... 4촌이내의 친척으로(3촌, 친 4촌, 외 4촌, 고종 4촌, 내종 4촌 순)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실가족 가족요령에 의거 순차적  
    으로 기입한다.  
    처가.....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부모 형제 등을 기입  
    ※ 상처 이혼 등으로 재혼하였을 시는 전처, 후처의 처가를 공히 기  
    입한다.  
    수학정도..... 출신학교명 및 전공과목을 기입  
    직장 및 직위..... 풍무원, 회사원, 검원을 막론하고 직장명 및 직위와 소재지를 명기  
    한다.  
    정당(사회단체) 및 직위..... 정당 및 사회단체명과 부서 및 직위를 필히 명시한다.  
    비교란..... 결혼구분은 중매, 연애, 촉월등으로 간명하고 이복형제등은 이복으  
    로 명기한다.

관계	성	명	연령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전파유무	정당 및 직위	종교	비고
가족사항	실								

\* 개인 또는 축식기업을 막론하고 자기 및 실가족이 운영 및 관여하는 기업체(주식인 경우 종합자금과 자기 투자 자금 분리)에 대하여 종업원수 및 소재지를 정확히 명기할 것

企 業 체	企業체명	생산품명	생산실적	설치된 중요기계	자본금	종업원수	소재지

\* \* 부동산을 망라하여 작성 당시 소유를 기입하고 가옥관계는 ( )표 (문화시설 포함)를 토지 해당란에는 평수를 기록할 것

재 산 관 계	남세 등급	월 수 입	월 지 출
	동 산	부 동 산	생활수준
	가 옥	자가, 전세, 월세, 판사, (양옥, 와가, 합석, 스파트, 초가, 판자)	평
	토 지	전물대지( 평), 임야( 평), 수답( 평), 과수원( 평)	

\* 보증인 및 추천인은 등용시 보증 및 추천한자를 기록하되 거주지 직장 및 직위 정당관계를 정확히 명기할 것

해외여행…등용전후, 시찰, 견학, 교육파견, 파월, 위문, 민간학교유학, 기타등으로 구분한다.

보 증 인	관계	성 명	연령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정 <sup>부</sup> 및 직위	거 주 지

  

추 천 인	기 간	국 명	여 행 목 적	체 류 지
	부 터 까 지			

  

천 우	기 간	국 명	여 행 목 적	체 류 지
	부 터 까 지			

  

해 외 여 행	기 간	국 명	여 행 목 적	체 류 지
	부 터 까 지			

\* 1945. 8. 15 이후 본인 및 실가족이 전전한 거주지를 간단없이 연차적으로 기입한다.

8.15 이 후 거 주 지	기 간	거 주 지	당시호주	전 거 사 유
	부 터 까 지			

\*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소를 막론하고 누락없이 기입한다.

“예” 특수철도 서울고등법원 67. 10. 1 마포교도소 징역 3년 복역  
폭행 종로경찰서 67. 10. 1 종로서유치장 7일간 구류 3,000원 벌금

진 처 과 및 벌	사 (죄명) 유	기 관 명	일 서	장 소	처 분 별

1968. 6. 14 (金曜日)

※ 가족 또는 친족중(4촌 이내) 복한 및 해외거주자가 있으면 가족관계란과 동일요령으로 기입

복 거 한 주 및 가 족 해 외 처 처	관계	성명	연령	수학정도	직장 및 직위	종교	정당사회단체 및 직위	전과	거주지	비고

※ 하기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허위진술하는 일 없도록 할것  
(조사결과 허위 진술이 발견될시는 징상을 참작할 수가 없음)

비 및 합 법 등 단 체 사 항 기 입	공신당 및 기타 비합법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 가입하고 있는가? 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그 단체중에서 청한 직위는?	
	가족 친척 중에서 상기단체에 가입 또는 관련 접촉이 있는 가? 6·25 당시 월북한자 및 행방불명된자는 없는가?	
	6·25 전후 1·4후퇴시 낙오 실종된 사실 유무와 적의 교 육 또는 지령을 받았는가?	

확 인 관 의 견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에 허위 및 고의적인 은익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어떠한 처벌  
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진술자 급수 순번 성명 인

※ 입회관(보안담당관 및 보관책임관) 및 확인관은 진술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없는가를 검  
토후 계급, 군번,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작성시 입회관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인

확인관 소속

방첩대

계급 군번 성명 인

24인

583

비밀취급구분		
I	II	III
인가년월일		

## 신원진술서(15-3호)

사

- 본 진술서를 기입하기 전에 반드시 서약란을 읽을 것.
-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여 한자로 자필하고 정서로 쓸 것.
-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할 것.
- 모든 주소지는 반드시 통, 반, 호수까지 세밀히 기입할 것.

진

※ 원적...이복출신은 북한의 본적, 전적자는 전적전의 본적을 기입.  
 이명...창씨명, 아명, 예명, 속명 등 병적상 착오된 성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기입.  
 본관...김해, 전주, 안동 등으로 호적상 본관을 기입.

성명	생년월일	이명			
군번	계급	국적			
월적		본관			
본적	성별	남녀	신장	cm	
주소	전화( )	종교	교파	체중	kg
소속		혈액형	A, B, O, AB	상처	
출생지	출생구분	적자, 서자, 사생아, 고아			
친권자주소	성명	관계			
최기경찰서	최기우체국				

※ 군입대 관계...최초 입대 부대의 고유 명칭  
 단체 및 써클 관계...정당 및 사회단체는 물론 재학 당시의 각종 써클을 가입 사실 관계를 세밀히 기입

군입대 관계		입대전 각종 단체 및 써클 관계		
입대일자		가입일자	가입동기	
부대명		단체명	탈당일자	
훈련기간	개월	기별	부서 및 직위	탈당동기

※ 외국어 특기...어명과 특기를 약기하고 속달정도를 상, 중, 하로 해당란에 ○표 기입 수학년수를 기입.  
 흡연...1일 평균 흡연량을 기입.  
 주...평상시 1회 음주량을 기입.

외국어	상, 중, 하	년	상, 중, 하	년
특기	상, 중, 하	년	상, 중, 하	년
흡연	1일	본정도	주량	흡
취미			기호물	

※ 재산관계...동산, 부동산을 망라하여 작성 당시 소유, 토지란에는 평수를 기입.  
 재산연혁...현 소유자를 명기하고 소유계된 동기와 변동된 내용을 기입.  
 문화시설...각 해당란에 ○표를 기입.

재산관계	납세 등급	월수입	월지출	
	동산	부동산	생활수준	상, 중, 하
	유산(상속)		축재	
	가옥	자가, 전세, 판사, 월세, 기타, 양우, 와가, 스텔트, 합석, 초가, 판자, 천막(      평)		
	토지	전용면적(      평), 임야(      평), 전답(      평), 파수원(      평)		
	문화시설	자가용, 텔레비죤, 라디오, 냉장고, 신문, 목욕탕, 수세식변소, 전화, 전축, 녹음기, 카메라, 피아노, (율전)		
	재산의연혁			25

※ 기 간...국민학교부터 최종학교까지 연차적으로 기입.  
 기록사항...○○회 ○○과 ○년 졸업, 수료 또는 ○○과 ○년 중퇴라고 구체적으로 기입.  
 소재지...학교가 위치한 소재지를 기입.

학 력	기 간	학 교 명	기 록 사 항	소 재 지
	부 터	까 지		

※ 연차적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일자 및 특명호수를 꼭 기재하고 변동사유에는 입교, 전속, 보직, 진급, 휴가, 입원 등을 기입. 비고란에는 참고사항을 기입.

병 력	년 월 일	부 래 명	변동사유	특명호수	비 고

※ 가족 관계...17세 이상 사망자 및 6·25 당시 행방불명 된자는 적색으로 기입.

실 가...동일 호적내의 전원을 기입한다.

근 친...4촌 이내의 친척으로(3촌, 4촌, 외고종, 내종 4촌순) 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로 실가 쪽 기록요령에 의거 순차적으로 기입.

처 가...그 가족을 대표할 수 있는 부모형제등을 기입.

※ 상처, 이혼등으로 재혼하였을 시는 전처, 후처의 처가를 공히 기입.

학 력...출신학교명 및 전공과목을 기입.

직장및직위...공무원, 회사원, 전원을 막론하고 직장명 및 직위와 소재지를 명기.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연 령	학력(학교명)	직 장 및 직 위	전 과 목	거 주 지

가족사항	근친								
	외가								
	처가								

※ 결혼관계 ※(특히 배우자의 가정환경 「경제, 사회, 교육관계」를 기입)

일시…결혼 일자를 기입.

장소…결혼예식장 명과 소재지를 기입.

주례자…성명과 직장 및 직위를 기입.

결혼관계	일시		장소	
	주례자		직장 및 직위	
	미혼, 조혼, 재혼, 중혼		증매, 연애, 예릴사위, 기타	
	배우자의 가정환경			

※ 배우인물…국회의원, 군장성, 별호사동 본인과 친분이 있는 저명인사를 기입.

관계란에는 전상판, 동향인, 학교선배 등을 필히 기입.

배우인물	관계	성명	연령	학력(학교명)	직장 및 직위	정당 및 직위	거주지

※ 해외여행

여행목적…초청, 유학, 시찰, 견학, 교육파견, 파월, 위문, 민간학교유학으로 구분기입. (임대전후)

체류지…거주장소까지 세밀히 기입.

해외여행	기간	국명	여행 목적	체류지
	부터	까지		

27

1968. 6. 14 (金曜日)

※ 귀향시 접촉인물…특히 요담내용 및 직장, 직위, 정당관계를 누락치 말고 기입.

귀 향 시 접 촉 인 물	관 계	성 명	연 령	접 촉 동 기	요 담 내 용	직 장 및 직 위	정 당 관 계	접 촉 일 시

※ 포상 및 처벌 관계를 연차적으로 기재하되, 구분, 년월일, 이유, 유공 및 처벌 내용을 꼭 기입.

포 상 및 처 벌 관 계	구 분	년 월 일 및 번 호	이 유	당 시 소 속	유 공 및 처 벌 내 용

※ 습 판…몸을 잘 훈련다. 눈을 깜빡인다. 등등  
장래 희망, 인생관 사회 및 국가관을 간단 명료하게 기입.  
예편후거취문제…정계, 경제계, 공업계, 교육계, 언론계 등을 기입.

사 회	습 판	인생관(생활관)
	장래 희망	사회 및 국가관
송배인물	국 내	국 외
예편후 거취 문제		

이 진술서에 기입된 것은 모두 진실이며 만약에 허위 및 고의적인 은의 사실이 발견될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진술자 계급 군번 성명 인

※ 입회관(보안 담당관 및 보관 책임관) 및 확인관은 진술 사항에 누락, 오기 또는 불명확한 점이 없는가를 검토후 계급, 군번, 성명을 기입 날인한다.

작성시 입회관 소속

계급 군번 성명 인

확인관 소속 방침 대

계급 군번 성명 인

28

587

# 고 시

## ◎농림부고시제1,816호

사료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배합사료 공장등록 사항을 취소 고시한다.

1968년 6월 14일

농림부장관

다음

배합사료공장등록취소

등록번호	공장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19	대구사료공업주식회사	이원학	경북 대구 칠성 2가 272

## ◎商工部告示第3,683號

貿易去來法施行令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換銀行의 長에 對한 權限委任의 範圍 및 承認要領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968年 6月14日

商工部長官

다음

外國換銀行의 長에 對한 權限委任의 範圍 및 承認要領

## 第1條 (推尋決済方式에 의한 輸出)

가. (委任範圍) 外國換管理規程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物品의 船積後 210日 또는 輸出換 어음 發行에 의하여 그 一覽後 180日 이내에 輸出代金의 全額을 指定通貨로 表示된 對外支給手段에 의하여 外國換銀行을 通하여 領收하는 경우

## 나. (申請要件)

1. 引受渡(D/A) 및 期限付信用狀(Usance L/C)의 경우에는 申請前月로부터 過去 1年間의 輸出實績이 美貨 50萬弗相當額 이 상인者

2. 支拂渡(D/P)의 경우에는 申請前月로부터 過去 1年間의 輸出實績이 美貨 30萬弗相當額 이상인者. 다만, 去來相對者가 政府機關일 때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 다. (具備書類)

1. 輸出許可(承認) 申請書 (貿易去來法施行規則 第11號書式) 5通
2. 海外公館長의 確認한 契約書
3. 他法令 및 規程에 의하여 許可 承認推

薦을 要하는 경우에는 당해 許可, 承認 王는 推薦書

4. 前 나項의 要件을 證明하는 書類  
라. (輸出實績)

당해 輸出品의 販賣代錢이 外國換銀行에 入金 되었을 때 當該商社의 輸出實績으로 認定 한다.

## 第2條 (輸出代金未回收處理)

## 가. (委任範圍)

外國換銀行에서 輸出承認된 鐵產物로써 그 未回收代金이 承認金額(FOB價格基準)의 10% 以下에 限한다.

## 나. (具備書類)

貿易去來法施行規則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書類

## 第3條 (推尋決済方式에 의한 輸入)

## 가. (委任範圍)

1. 外國換管理規程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內에서 船積書類 또는 物品의 領收와 同時에 物品의 輸入代金의 全額을 指定通貨로 表示된 對外支給手段에 의하여 外國換銀行을 通하여 支給하는 境遇

2. 引受渡(D/A)는 商工部告示 第3,209號 및 告示 第3,589號에 의한다.

## 나. (受任機關)

韓國外換銀行에 限한다.

## 다. (具備書類)

貿易去來法施行規則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

## 第4條 (受託加工貿易)

## 가. (委任範圍)

輸出代金을 輸出正常決済方式 및 第1條에 規定된 期間內에 領收하고 輸入代金을 輸入正常決済方式에 의한 期間內에 支給하는 경우에 限한다.

## 나. (申請要件)

1. 關稅法의 規定에 의한 稅關長의 設營特許를 받은 保稅工場에서 加工할 것
2. 先輸入 後輸出에 限한다.
3. 輸出信用狀은 加工貨에 限하여 받을 것
4. 稟得率이 10% 이상일 것

加工輸出額(FOB)  
原資材輸入額(CIF)  $\times 100 \geq 110$

5. 輸出入品目의 單價는 當該輸出入 物品基  
準價格公告品目일 경우에는 이에 合當할것

다. (具備書類)

1. 輸出入許可(承認)申請書(貿易去來施行規則  
第13號書式) 4通

2. 輸出信用狀 또는 海外公館長이 確認한 受  
託加工輸出入契約書

3. 主務部長官이 發行한 所要量證明書(基準  
所要量이 公告 또는 通報된 경우에는 同  
計算書)

4. 其他 許可(承認)을 함에 있어서 必要로  
하는 參考書類

라. (事後管理)

商工部告示 第2,944號 第7條 및 第8條를 準  
用한다.

마. (準用規定)

1. 無換으로 輸入된 原資材를 一次加工後  
國內에 있는 二次加工業者에게 再加工輸出  
條件으로 引渡(輸出이라 한다)하거나 一次加  
工品을 引受(輸入이라 한다) 받은 二次加  
工業者가 이를 加工하여 無換으로 輸出可  
자하는 경우에도 前各項의 規定을 準用한  
다.

2. 前號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承認을 得  
하여 輸出通關을 完了한 후 당해 實績을  
一次加工業者와 二次加工業者の 輸出實績으  
로 分讓可자할 때에는 다음의 書類를 具  
備하여 商工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①輸出通關免狀

②合意書

③당해 稅關長이 發行한 一次加工品의 移  
庫證 및 二次加工業者が 發行한 一次加  
工品의 引受證 各 1通

3. 輸出에 所要되는 原資材中 主資材는 無  
換으로 副資材는 有換으로 輸入하는 경우  
에도 前各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條 (報告) 第1條내지 第3條의 承認事務을  
處理한 각 外國換銀行의 長은 다음 報告書를  
商工部長官에게 月報로 翌月 5日까지 提出하여  
야 한다.

가. 第1條의 事務

①다음 第1號書式에 의한 輸出承認狀況  
②別紙 第2號書式에 의한 D/A Usance領收  
狀況

나. 第2條의 事務

別紙第2號書式에 의한 未回收代金 處理狀況

다. 第3條의 事務

別紙第4號書式에 의한 輸入承認狀況

**第6條 (同前)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入  
의 承認을 받은 者는 前月分의 輸出履行狀況  
을 韓國保稅加工品輸出協會長에게 翌月 3日까  
지 提出하여야 韓國保稅加工品輸出協會長은 이  
를 統合하여 每月 5日까지 商工部長官에게 報  
告하여야 한다.**

附 則

1. 이 告示는 告示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2. 商工部公告 第3,715號(1966年2月24日)

商工部告示 第2,262號(1965年10月28日) 및 商工  
部告示 第2,855號(1966年11月14日)는 이를 廢止  
한다.

[第1號書式]

( )月分D/P D/A 輸出承認狀況

商工部長官 貴下 196

當行에서 取扱한 D/P D/A Usance L/C 輸出承認狀況  
을 다음과 같이 報告합니다.

商社名	承認 日字	承認 番號	SITC	品名	單位	數量	金額	輸出 目的地	備考

計								
今月 累計								

註: D/A D/P Vsance%別로 作成할 것 30

○ ○ 589 行長 ④



다 음	면 허년월일	매 립 장 소	수면 종류	매 립 적	목 적	착 기	수 간	준 기	공 간	면허를 주 소	받은 자 의 명
	1968. 6. 13	경기도 인천시 원창동 울도 및 복도 지선	해면	36,490명	화력 발전소 건립 부지 조성	실시 계획 인가 일로 부터 10개 월 이내	착수 일로 부터 2년 6 개월 이내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5번지 한국 전력 주식회사 사장 정래	성 협

## ◎건설부고시제369호

공유수면 매립면허 조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고시한다.

1968년 6월 13일

건설부장관

다 음	조건변경 년월일	면 허년월일	매 립 장 소	수면의 종류	당초 매 립 면적	변경된 매 립 면적	목 적	착 기	수 간	준 기	공 간	면허를 받은 자 의 주소 성명
	1968. 6. 13	1967. 5. 9	경기도 인천시 가좌동 울도 지선	해면	1,130, 987평	1,115, 287평	공장 부지 조성	실시 계획 인가 일로 부터 2개 월 이내		착수 일로부터 5개년 이내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59의 1 국토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영식

## ◎건설부고시제370호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이에 고시한다.

1968년 6월 13일

건설부장관 주 원

다 음	도로구역 결정에 관한 고시	종 류	로 선 명 구	간	총연장
		2급국도	서울·인천선	자 : 서울특별시 영동포구 양평동 3가 지 : 경기도 인천시 신흥동	29.96

중요 경과지 구역 결정 이유 비 고  
 영동포구 신월동 도로 사업을 철로 선에 대한 도로로 부천군 오정면 삼정리 시행하기 위함 구역을 결정함.  
 인천시 가좌동  
 관계 도면은 건설부 국토보전국 도로과에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공한다.

## ◎건설부고시제371호

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면허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68년 6월 14일

건설부장관 주 원

다 음	면 허년월일 및 번호	매 립 면 허 장 소	수 면 의 종	목 적	면 허 인 의 주 소
	1968년 5월 31일 전국항 419. 22-345	전남 무안군 해제면 당산, 창대 실원 명약리 및 동군지도면, 자동차 서적거장동 외 양리 지선	해면	양식장 및 잡종지 조성	4, 117, 416 평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성동 2가 233번지 임광섭 외 4명

## ◎영남국토건설국고시제11호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획을 변경한가하였으므로 고시한다.

1968년 6월 11일

영남국토건설국장

다 음	변경 허가 년월일	매 립 장 소	수 면 종	목 적
	1968. 6. 11	북제주군 한림읍 한림리 1328번지	해면	수산업 시설 용부지 조성

계획변경의 요점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 성명 비교  
 계단설치 2개소를 1개소로 변경 북제주군수 김태진

## 공 고

## ◎보건사회부공고제47호

의료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서울대학교 직원 의료보험 조합" 설립을 인가하였기에 공고한다.

1968년 6월 1일

보건사회부 장관 32

다 음

1. 조합명칭: 서울대학교 직원의료보험조합
2. 주된사무소와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  
전동28번지
3.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소의 명칭 및 소  
재지: 국립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32번지
4. 인가번호: 보의지 호
5. 인가년월일: 1968년 4월 18일

## ◎보건사회부공고제48호

산재보상보험 요양담당 의료기관중 다음과 같이  
계약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였기 이를 공고한다.

1968년 6월 12일

보건사회부장관

다음

요양담당계약서기재사항변경

## (기1) 부산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이우영외과의원	부산한일병원
소재지	부산시부산진구 부전동255의2	좌와동
관리자성명	이우영	"
주소	부산시부산진구부전 동255의2	"
진료과목	일반외과	외과, 정형외 과, 내과, 산부인과
변경사유	의료기관명칭및진료 과목변경	

## (기2) 춘천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대한석탄공사합백 광업소부속병원	좌와동
소재지	정선군신동면조동 리	"
관리자성명	김만곤	김좌호
주소	정선군신동면조동 리	좌와동
진료과목	외과, 치과	"
변경사유	관리자명의 변경	

## (기3) 광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김남기외과의원	좌와동
소재지	광주시충장로4가 27의3	광주시금남로5 가62
관리자성명	김남기	좌와동
주소	광주시충장로4가 27의3	"
진료과목	외과	"
변경사유	소재지 변경	

## (기4) 광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호남전기공업주식 회사부속의원	좌와동
소재지	광주시우산동540	"
관리자성명	심상하	심상우

주소	광주시우산동540	좌와동
진료과목	일반과	좌와동
변경사유	대표이사(관리자) 명의변경	

## (기5) 광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설정식안과의원	좌와동
소재지	광주시충장로5가 40-1	광주시금남로5 가62
관리자성명	신정식	좌와동
주소	광주시충장로5가 40-1	광주시금남로5 가62
진료과목	안과	좌와동
변경사유	소재지변경	

## (기6) 광주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의료기관명칭	정치파의원	좌와동
소재지	광주시금남로5가99	광주시금남로5 가62
관리자성명	정달수	좌와동
주소	광주시금남로4가9	"
진료과목	치과	"
변경사유	소재지변경	

## 지방행정

## ○忠淸北道

## ◇條例

## ◎忠淸北道條例第293號

內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改正한 忠淸北道 道政諮詢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를 이에 公布한다.

1968年 6月 5日

忠淸北道知事 金孝榮

忠淸北道道政諮詢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

忠淸北道道政諮詢委員會條例中 다음과 같이 改正  
한다.

第6條의 2를 削除한다.

第10條中 “파研究委員”을 削除한다.

## 附則

이 條例는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忠淸北道道政諮詢委員會條例改正對比

## 改正前 改正後

第6條의 2 (研究委員) ①委員會	第6條의 2를削除
는 必要에 依하여 研究委員 若干名을 둘 수 있다.	한다.
②研究委員은 道知事의 要請에 依하여 道政發展에 關한 事項을 研究한다.	33

改 正 前 改 正 後  
 第10條 (手當 및 旅費) 會議에 第10條中 “파 研究  
 參席한 委員과 論究委員에 對 委員”을 刪除한  
 하야는 規則이 定하는 바에 따 다.  
 라 手當과 旅費를 支給한다.

시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그 소지인은 1968년 10월 15일  
 10시까지 당원에 권리를 계출하고 또 다음 목록 기재  
 의 증서를 제출할 사.  
 위 기일까지 계출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는 무  
 효를 선언한다.

1968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효권

## 證書의 重要한趣旨

1. 種 類 手票 2枚

1. 番號·額面·發行年月日 및 支給人

番號 額面 發行年月日 支給人  
110888 金 50,000원整 1968年 6月 5日 株式會社韓一  
銀行510185 金 100,000원整 1968年 5月 31日 株式會社韓一  
銀行馬山支店

1. 發 行 人 박지상

1. 發 行 地 馬山市

1. 受 取 人 所持人拂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588

마산시 오동동 146번지의 13

신청인 박원홍

다음 목록 기재의 증서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공  
 시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그 소지인은 1968년 10월 15일  
 10시까지 당원에 권리를 계출하고 또 다음 목록 기재  
 의 증서를 제출할 사.위 기일까지 계출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는 무  
 효를 선언한다.

1968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효권

## 證書의 重要한趣旨

1. 種 類 手票 1枚

1. 番 號 728252

1. 額 面 金 110,000원整

1. 發行年月日 1968年 6月 5日

1. 發 行 人 박원홍

1. 支 紿 人 昌原郡農業協同組合馬山支所

1. 發 行 地 馬山市

1. 受 取 人 所持人拂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586

마산시 서성동 84

신청인 김법영

다음 목록 기재의 증서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공  
 시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그 소지인은 1968년 10월 15일  
 10시까지 당원에 권리를 계출하고 또 34 목록 기

## ○인사발령

◎1968년 6월 12일자

(감사원 제 1국 제 1과)

부감사관 김동섭  
(金東燮)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 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위를 해제함.

## 광고

## ○공시최고

68. 카. 590

마산시 장군동3가 23

신청인 강갑준

다음 목록 기재의 증서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공  
 시최고 신청이 있으므로 그 소지인은 1968년 10월 15일  
 10시까지 당원에 권리를 계출하고 또 다음 목록 기재  
 의 증서를 제출할 사.  
 위 기일까지 계출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는 무  
 효를 선언한다.

1968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효권

## 證書의 重要한趣旨

1. 種 類 手票 2枚 및 約束어음 1枚

1. 番號·額面·發行年月日 및 受取人

番號 額面 發行年月日 受取人

기유치 58296 金 100,000원整 1968年 6月 4日 所持人拂

기유치 58297 金 293,300원整 " "

(以上 手票 2枚)

第14號 金 40,000원整 1968年 4月 25日 未記入

(以上 約束어음 1枚)

1. 發 行 人 강갑준

1. 支 紿 人 中小企業銀行馬山支店

1. 發 行 地 馬山市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587

마산시 중성동 18

신청인 박지상

다음 목록 기재의 증서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공

재의 증서를 제출할 사.

위 기일까지 제출 및 제출을 하지 아니할 때는 무  
효를 선언한다.

1968년 6월 8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판사 이효원

證書의重要한趣旨

1. 種類 手票 2枚

1. 番號·額面 및 發行年月日

番號 額面 發行年月日

111928 金100,000원整 1968年6月5日

104635 金110,000원整 1968年6月6日

1. 發行人 김범영

1. 支給人 株式會社 韓一銀行馬山支店

1. 發行地 馬山市

1. 受取人 所持人拂

1. 最後所持人 申請人

68. 카. 150

원주시 봉산동1구 1136번지 44반

신청인 고락승  
(高樂昇)

다음 증서의 소지인은 1968년 9월 30일 10시까지 본 법  
원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  
기 바라며 만일 이를 해태하면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되는 수가 있다.

1968년 6월 11일

춘천지방법원

판사 김구남

證書의重要한趣旨

1. 種類 自己앞手票

1. 番號 DNo210244

1. 額面 金120,000원整

1. 發行年月日 1968年6月8日

1. 支給人 第一銀行原州支店

1. 發行地 原州市

1. 受取人 所持人

1. 最後所持人 申請人

### ○제권 판결

68. 카. 151

원주시 단계동 94번지

신청인 정관철  
(鄭觀澈)

다음 기재 증권에 대하여 1968년 6월 10일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권을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주 문

다음 기재 증권의 무효를 선고한다.

1968년 6월 12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사 김구남

證書의重要한趣旨

1. 種類 自己앞手票

1. 番號 기유삼 D305558號

1. 額面 金100,000원整

1. 發行年月日 1968年2月20日

1. 支給人 中小企業銀行原州支店

1. 受取人 鄭觀澈

1. 最後所持人 申請人

### ○공고

당원 65.파.5.213.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46 조  
선제분 주식회사(朝鮮製粉株式會社)에 대한 회사 정리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1968년 6월 13일 정리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7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공고한다.

기

종결정의주문

본건 정리 절차를 종결한다.

종결결정의이유

당원이 1967년 8월 18일 인가한 정리 계획이 수행될 것  
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기에 이르렀으므로 회사 정리법  
제271조제 1항을 적용한 것이다.

1968년 6월 13일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김희남